

20년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

□ 목 적

-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은 건설업체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토록 하여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

* 건설업 중 높이 31미터이상 건축물 공사 등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공사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확인받는 제도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제6항 및 제47조, 시행규칙 별표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호(2020. 1. 7.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 지정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을 이하이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2020년도의 경우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율은 직전 1년간(2019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이 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 '19.8.1.~'20.7.31. 기간 동안 동시 2명이상 근로자 사망재해가 없어야 함

□ 지정 결과

- 지정 기간 : '20. 8. 1. ~ '21. 7. 31.(1년)
- 지정 업체 : 삼성물산(주) 등 32개 건설업체

시공순위	건설업체명 (굵은 글씨: 2년 연속 선정 업체)
100위 이내 (31개사)	삼성물산(주), 대림산업(주), 지에스건설(주), (주)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주)호반건설, 에스케이건설(주), (주)한화건설, (주)태영건설, (주)부영주택, 계룡건설산업(주), 금호산업(주), 두산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신세계건설(주), (주)케이씨씨건설, 대방건설(주), 동부건설(주), 화성산업(주), 엘티삼보(주), 씨제이대한통운(주), 대보건설(주), (주)이테크건설, (주)케이알산업, 신동아건설(주), 동원건설산업(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이수건설(주), 경남기업(주), 한일건설(주), 남광토건(주)
101위 ~ 200위 이내 (1개사)	동서건설(주)

□ 혜택

- 향후 1년간('20.8.1.~'21.7.31.) 지정 건설업체가 착공하는 모든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확인 면제

□ 지정해제

- 지정 건설업체에서 동시에 2명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제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확인 재개

※ 사망재해 1명 발생 시 해당 현장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공단의 확인 재개

□ 행정사항

- 대상통보 : 지정 건설업체 명단(32개사)을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지정업체에 개별 통보

- 사후관리

<지방관서>

- 지정 건설업체 시공현장에서 조사대상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정기감독 등 실시

- 공단의 모니터링 결과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하다고 통보받은 현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안전보건공단〉

- 지정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사·확인 내용에 대한 선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한 현장은 해당 지방 노동관서에 즉시 통보

*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위험공정 자체확인 등에 대한 지도·조언 실시

- 지정 건설업체 현장에서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른 사망재해 발생 시 확인 재개